

## 나.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<sup>1)</sup>

### 주 해

1. 아래의 약속 목록(이하 “이 양허표”라 한다)은 제7.13조에 따라 자유화된 경제적 활동과, 유보에 의해 그 활동에서 유럽연합 당사자의 설립과 투자자에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을 표시한다. 이 양허표는 다음 요소로 구성된다.

가. 대한민국에 의해 약속이 수행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,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열

나.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.11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두 번째 열, 그리고

다. 첫 번째 열에 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제7.12조에 적용 가능한 유보를 기술하는 세 번째 열

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아니하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설립은 약속되지 아니한다.

2.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대한민국 양허표의 이미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설립에 대해서는 이 양허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.

3. 제7.11조 및 제7.12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7.11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. 이 경우 그 기재는 또한 제7.12조에 대한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.<sup>2)</sup>

---

1)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“1. 수평적 약속”에 기술된 핵심인력, 대졸 연수생 및 상용서비스 판매자에 대한 제한은 관련있는 경우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또한 적용된다.

2) 이 항의 목적상 제7.12조에 따라 규정된 대우는 대한민국이 당사국이며 이 협정의 서명 이후 발효될 자유무역협정에서 약속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.

4. 제7.11조에도 불구하고, 설립의 법적 형태의 종류에 대한 비차별적 요건은 대한민국에 의해 유지 또는 채택되기 위하여 이 양허표에 명시될 필요가 없다.

5. 대한민국은 제7.13조에 따라 자유화되지 아니한 경제적 활동에서의 핵심인력,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대하여 제7.18조 및 제7.19조에 따른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아니한다.

핵심인력,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에 관한 제7.18조 및 제7.19조에 따라 수행되는 대한민국의 약속은 그들의 일시적 주재의 의도 또는 효과가 노사 분쟁 또는 협상에 개입하거나 달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, 거주 또는 고용과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입국 및 일시적인 체류가 허용된 핵심인력,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는 대한민국의 이민 및 노동 법을 준수한다.

6. 개별 분야 및 하위 분야를 확인함에 있어, **ISIC 개정판 3.1**이란 국제연합 통계국 통계문서 시리즈 M, N° 4, 2002년 발간 ISIC 개정판 3.1에 규정된 “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”를 말한다.

7. 자격요건 및 절차,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제7.11조 및 제7.12조의 의미 내의 시장접근 또는 내국민대우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, 이 양허표는 그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. 그러한 조치(예를 들어 면허

취득 요구, 보편적 서비스 의무, 규제되는 분야의 자격인정 획득 요구, 언어 시험을 포함하여 특정한 시험 통과 요구 및 일정한 활동이 환경적으로 보호받는 구역 또는 특정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이익이 있는 지역에서 수행될 수 없도록 하는 비차별적 요건)은 비록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, 다른 쪽 당사자의 설립 및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.

8. 제7.1조에 따라, 이 양허표는 대한민국에 의해 부여되는 정부지원 용자, 보증 및 보증을 포함하여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9. 이 양허표에서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는 자기 집행적인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다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토지 취득</b></p> <p>외국인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토지취득이 계속 허용됨.</p> <p>(1) <i>외국인토지법</i> 제2조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경우, 그리고</p> <p>(2) 아래의 정당한 사업목적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, <i>외국인토지법</i>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나 외국법인의 지점인 경우. 단, <i>외국인토지법</i>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.</p> <p>(a) 정상적인 사업 활동  (b) 고위경영진의 주거, 또는  (c)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의 충족</p> <p>외국인에 의한 농지취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</p>	
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투자</b></p> <p>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<sup>3)4)</sup></p> <p>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식경제부장관령에 따라 사전에,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.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비율과 같은 문제의 변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한이 허용됨.</p> <p>방위산업의 투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신규발행된 공모주 외에 방위산업의 공모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.</p>	

3) 이 유보는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.

4) 이 유보의 목적상, “공기업”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됨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	<b>취약집단</b> 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소수 민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집단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<sup>5)</sup>	
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	<b>국가소유의 전자/정보 시스템</b> 국가 고유의 비밀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 기능 및 권한행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소유의 전자정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이 유보는 금융서비스 관련 지급 및 결제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.	
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총포, 도검, 화약류 등</b></p> <p>총포, 도검, 화약류의 제조, 사용, 판매, 보관, 운반, 수입, 수출 그리고 소지를 포함하여 총포, 도검, 화약류 분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원자력 에너지</b></p> <p>원자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전력산업</b></p> <p>발전, 송전, 배전 및 전력 판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그러한 조치는 D(a)a) (ISIC 개정판 3.1 : 401)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전력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가스산업</b></p> <p>천연가스의 수입 및 도매 그리고 인수기지와 전국 고압 주배관망의 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약속 안함. 그러한 조치는 D(a)b) (ISIC 개정판 3.1 : 402)상에 열거된 바와 같이 가스산업에서 허용되는 외국소유 총합 수준을 감소시키지 않음.</p>	

5) 취약집단을 고용하는 회사에 대한 조치는 비차별적 방식으로 적용됨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A. 농업, 수렵업 및 임업		
(a) <u>농업,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 활동</u> (ISIC 개정판 3.1: 011, 012, 013, 015)	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.  외국인 투자자는 육우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 50퍼센트 이상을 보유할 수 없음.	벼 또는 보리 재배업에 대해 약속 안함.
(b) <u>임업 및 벌목업</u> (ISIC 개정판 3.1: 02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B. 광업 및 채석업		
(a) <u>석탄, 갈탄의 채광; 토탄의 채광</u> (ISIC 개정판 3.1: 10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b) <u>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; 탐사를 제외한 원유 및 가스 채취에 수반된 서비스 활동</u> (ISIC 개정판 3.1: 11)	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 없음:  (a) 해저석유 <sup>6)</sup> 채취권은 정부만 보유할 수 있음. 그리고  (b) 이러한 권리는 제한된 기간 동안, 면허업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. 단, 신청인은 비차별 및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.	제한 없음.
(d) <u>금속 광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3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e) <u>기타 광업 및 채석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4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
6) “석유”는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함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C. 제조업		
(a) <u>음식료품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5, 곡물도정 제외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b) <u>담배제품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6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c) <u>직물류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7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d) <u>의복 제조업; 모피의 가공 및 염색</u> (ISIC 개정판 3.1: 18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e) <u>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; 가방, 핸드백, 안장, 마구류 및 신발류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19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f) <u>가구를 제외한 목재 및 목제품, 코르크 제품 제조업; 고공품 및 조물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0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g) <u>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1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h) <u>출판, 인쇄, 기록매체 복사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2,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업 제외) <sup>7)</sup>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i) <u>코르크스 제조로 제품의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31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j) <u>석유 정제품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32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
7) 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한 출판 및 인쇄는 사업서비스 중 기타 사업서비스 r)에서 확인됨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(l) <u>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제조업</u> a) 기초 화학물질의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41 방사성동위원소 제조업 제외) b)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42) c) 합성섬유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43)	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	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
(m) <u>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5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n) <u>기타 비금속광물 제품의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6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o) <u>제1차 금속의 제조업</u> (ISIC 개정판 3.1: 27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p) <u>기계류 및 장비를 제외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</u> ((ISIC 개정판 3.1: 28 원자로 제조업 제외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q) <u>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</u> a) 일반목적의 기계류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91) b)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특수 목적 기계류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921, 2922, 2923, 2924, 2925, 2926, 2929) c)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구의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293)	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	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  제한 없음.

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(r) 사무, 회계 및 계산용 기계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0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s)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류 및 장치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1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t) 라디오, 텔레비전 및 통신장비·기기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2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u)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3, 방사선 발생 장치 제조업 제외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v) 자동차,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4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w) 기타 (비군사용) 운송장비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5, 군함, 군용 항공기 및 기타 군사용 운송장비 제외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x) 가구 제조업;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조업 (ISIC 개정판 3.1: 36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(y) 재활용 (ISIC 개정판 3.1: 37)	제한 없음.	제한 없음.

분야 또는 하위 분야	시장접근에 대한 제한	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
D. 전기, 가스 및 수도 사업		
<p>(a) <u>전기, 가스, 증기 및 온수 공급</u></p> <p>a) 에너지 산업-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; 전력의 운송, 유통 및 판매 (ISIC 개정판 3.1: 401)</p>	<p>한국전력공사의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.</p> <p>발전설비 용량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 열병합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.</p> <p>송전, 배전 및 판매 사업에 대한 외국소유지분비율의 총합은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함. 외국인은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.</p> <p>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.</p>	
<p>b) 가스 제조; 가스배관을 통한 가스연료 공급 (ISIC 개정판 3.1: 402)</p>	<p>외국인은 총합하여 한국가스공사 지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.</p> <p>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단일 주주의 지분은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.</p>	
<p>(c) 증기 및 온수 공급 (ISIC 개정판 3.1: 403)</p>	<p>제한 없음.</p>	<p>제한 없음.</p>